

환경경영체제 구축 실무<13>



김 봉 조
(주)아스프 전문위원

목 차

1. 환경경영체제(ISO 14001) 구축을 위한 준비
2. 환경경영체제(ISO 14001) 구축 실무
 - 1) 초기환경 검토
 - 2) 환경방침
 - 3) 환경영향평가
 - 4) 환경목표 · 세부목표 · 환경경영추진계획
 - 5) 운영관리
 - 6) 문서화 및 문서 · 기록 관리 체계
 - 7) 환경교육
 - 8) 비상대응체계
 - 9) 점검 및 시정조치
 - 10) 경영자 검토
 - 11) 인증 검사
3. 환경경영체제 사후 관리

11) 인증 심사

가) 인증 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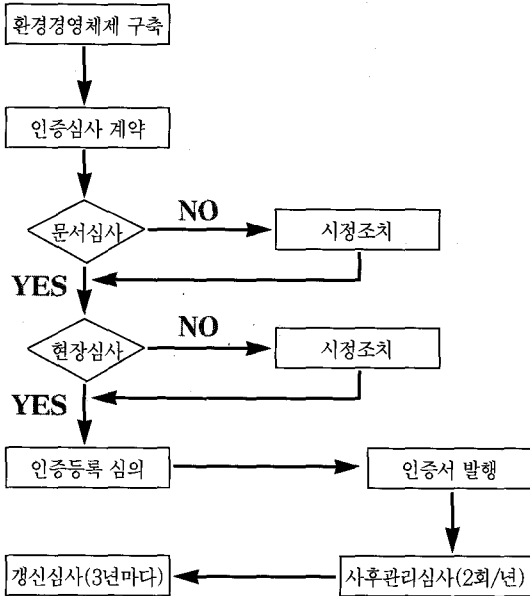
환경방침 수립에서 시작하여 경영자검토를 마치게 되면 환경경영체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동안 구축하고 운영한 환경경영체제를 제3자인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인증 심사 단계가 남아 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 심사도 품질경영체제 인증 심사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1) 인증기관 선정 및 심사 계약

인증 심사를 진행할 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인증기관과 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인증 심사 계약은 환경경영체제 구축 활동 초기에 하는 것이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인증기관은 기업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



로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인증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품질경영체제(ISO 9000)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은 품질경영체제 인증 심사를 진행한 인증기관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질과 환경을 각 각 별개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인증기관에서 품질·환경 통합심사를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2) 문서심사

기업이 환경경영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환경경영 매뉴얼 및 절차서)를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문서심사이다. 문서심사에서는 문서에 기술된 환경경영 운영 절차가 ISO 14001 규격 요구사항에 적합

하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평가한다.

문서심사에서도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수 있으며, 문서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은 현장심사 실시 전에 시정되어야 한다.

문서심사는 가능하다면 내부감사와 경영자검토 중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제3자인 인증기관이 수행한 문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자검토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현장심사

문서심사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인증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심사는 문서심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환경경영체제 운영 상태를 심사한다. 즉, 기업이 구축하고 운영 중인 환경경영체제가 ISO 14001 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심사는 시작회의, 경영자 인터뷰, 현장 순회, 심사 및 종료회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작회의는 심사원과 기업의 임직원이 서로 인사를 하고 심사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시작회의는 약 30

환경경영체제 인증 심사에서는 생산현장의 환경관리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상태, 폐기물 보관 및 처리상태, 폐수처리장의 운영 상태 등 기업의 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심사원이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장순회이다.

심사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가 ISO 14001 규격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본격적인 활동이다. 심사원은 심사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은 내재된 부적합사항을 도출하여 환경경영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분 이내의 시간으로 진행되며 현장심사의 출발점이다.

경영자 인터뷰는 심사원이 환경경영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방향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심사원에게 회사의 환경 현황 및 환경경영 방향을 설명하고 심사원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하면 된다.

환경경영체제 인증 심사에서는 생산현장의 환경관리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상태,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상태, 폐수처리장의 운영 상태 등 기업의 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심사원이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장순회이다.

심사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가 ISO 14001 규격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본격적인 활동이다. 심사원은 심사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은 내재된 부적합사항을 도출하여 환경경영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심사는 심사원이 피심사자에게 환경경영체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고 피심사자가 답변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원의 질문에 대한 피심사자의 답변을 듣고 미심쩍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관련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여 적합여부를 심사원은 판단한다.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기업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종료회의이다. 심사원은 심사 중 발견한 부적합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환경경영체제 지속적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종료회의가 끝나면 현장심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기업은 현장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시정조치 하여야하며,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인증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업에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서를 발행한다.

(4) 사후관리 심사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사후관리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후관리 심사는 년2회 실시되고, 매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갱신심사는 3년 주기로 받아야하나 사후관리 심사 주기는 인증기관이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 심사 준비 및 대응

(1) 준비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교육
- 환경경영체제 운영 기록 및 문서
- 심사일정, 심사장소
- 현장 정리정돈

(2) 대응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심사에 대응한다.

-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피심사자는 심사원의 질문에 숨기거나 속일 필요가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심사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다고 하여 인증을 영원히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면 언제든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심사원을 속일 필요는 없다.

심사를 환경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성과를 향상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



기보다는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심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기업이 환경경영체제를 운영하다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심사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경영에 대한 전문가이다.

이러한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환경경영체제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활동이 인증 심사이다. 인증 심사는 심사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그런데 일부 기업은 환경경영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인증 심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심사원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적지 않은 심사비를 지급하고 심사를 받는데 심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낭비이다.

그러므로 심사원이 충분히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검토하고 개선 대상을 도출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심사원의 심사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원으로부터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사항을 질문하는 등 심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원은 인증 심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논쟁을 하지는 않는다.

“심사원이 부적합사항이라고 지적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다. 부적합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기업에서 심사원이 지적한 사항이므로 무비판적으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였지 왜

피심사자는 심사원의 질문에 숨기거나 속일 필요가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심사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다고 하여 인증을 영원히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면 언제든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심사원을 속일 필요는 없다.

심사를 환경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성적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보다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적합사항이라고 심사원이 지적하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심사원이 피심사자에게 왜 부적합사항 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피심사자가 심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적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심사원도 사람이므로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잘못 이해하고 실수할 수 있다. 심사원이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는 기업 구성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심사원이 지적하였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무비판적으로 부적합사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심사원에게 기업의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심사원과 성실한 토의를 통하여 심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해할 수도 있고 심사원이 기업의 현황을 이해하고 지적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원과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대화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접어두고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논쟁이 되었던 사항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인증기관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

다음호에 계속...